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지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
----------	----

발의연월일 : 2026.08.14.

발 의 자 : 오지환 의원(1명)

찬 성 자 : 김해바른·정민우·안종숙
박은경·이은경·김안숙
하서영·박미정
의원(총 8 명)

1. 제안이유

노년층의 대상포진 진료 인원이 매해 늘어남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됨. 현재 서초구는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한하고 있어,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기존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전 구민으로 확대해 대상포진에 따른 질병 부담을 줄이고, 관내 고령층의 건강 격차 완화와 구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규정(안 제3조)

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횟수를 규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예산편성 필요(비용추계서 첨부, [붙임2])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라.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65세 이상 구민

제4조제1항제2호 중 “1회”를 “평생 1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자) 예방접종은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지원한다.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자)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단서 신설>	2. ----- ----- .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 65세 이상 구민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상포진: 1회	2. ----- 평생 1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1]

관 계 법 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6. 6. 24.)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

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2024. 9. 20.>

[붙임2]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관련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조 례 안 : 2027년 지자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현행 65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서초구민 전체로 확대 예정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대상 및 실시기준(지원 범위 등)을 정비

연번	조·항	개정안
1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자) 제2호 가목	가.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구민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1항 제2호	2. 대상포진 : 1회 -> 평생 1회

- 세출요인 : 예방접종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예방접종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예방접종비 지원 등
 - (접종대상) 65세 이상 서초구민 중 기접종자 제외
 - (지원내용) 대상포진 백신 선택접종(택1), 평생 1회 지원
 - 생백신 93,310원 (백신비 73,700원 + 시행비 19,610원)
 - 사백신 100,000원 (사백신 2회 접종 비용 중 구비 지원금 제외금액 본인부담)
 - (목표접종률) '27년 접종률 25% ← 타구 65세 이상 확대 시 평균 접종률 22% 반영
 - 본 추계는 접종비 지급액만 반영한 금액이며, 홍보비 등은 별도 소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세입	-	-	-	-	-	-
	소계	-	-	-	-	-	-
세출	○접종비 지원	1,304,000	860,000	577,100	554,800	517,500	3,813,400
	소계	1,304,000	860,000	577,100	554,800	517,500	3,813,400
□ 총 비용		1,304,000	860,000	577,100	554,800	517,500	3,813,4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비						
	시비						
구비	자체 수입	1,304,000	860,000	577,100	554,800	517,500	3,813,400
	의존 수입						
	보조금						
	재원						
지방채							
기금							
특별회계							
기타							
합계		1,304,000	860,000	577,100	554,800	517,500	3,813,400

5. 덧붙이는 의견

○ [추계액 성격]

- 해당 안은 예방접종 지원계획(백신종류 및 지원 범위 등)에 따라 재정지출이 달라질 수 있음

○ [추계액 활용유의]

- 향후 소관부서에 의해 해당 정책이 보다 구체화 될 경우 소요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추계액은 대략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작성자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2-2155-806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예방접종비 지원 등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총 3,813,400천원 ('27년~'31년)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예방접종비 등	1,304,000	860,000	577,100	554,800	517,500	3,813,400

- 산출내역

1) 서울특별시 서초구 65세 이상 인구증가율 추계

(단위 : 명)

구 분	2026.6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65세 이상 서초인구수(명)	73,931	77,628	81,509	85,585	89,864	94,357
전년 대비 증가율	5.8%	5.0%	5.0%	5.0%	5.0%	5.0%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의 경우 실제 전년 대비 증가율 5.8% 적용함.
2027년 이후 최근('23년~'26년) 평균 증가율 5.0% 적용함.

2) 예방접종 대상자 추계

(접종대상자) 미접종자(기접종자 제외) × 목표접종률

(목표접종률) '27년 접종률 25% ← 타구 65세 이상 확대 시 평균 접종률 22%반영

초기 집중 접종 종료 및 미접종자 감소함에 따라 연도별 접종률을 단계적으로 보수 적용

(단위 : 명)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65세 이상 서초인구수 (명)	77,628	81,509	85,585	89,864	94,357
기(누적)접종자	25,469 ('26. 6.기준)	38,509	47,109	52,880	58,428
미접종자	52,159	43,001	38,476	36,984	35,929
목표접종률반영	25%	20%	15%	15%	15%
접종대상자	13,040	8,600	5,771	5,548	5,175
접종대상자 포함한 기(누적)접종자	38,509	47,109	52,880	58,428	63,603
목표누적접종률	50%	58%	62%	65%	67%

* '26년 6월 기준 서초구 65세이상 대상포진 1차 접종등록자(약독화생백신 또는 유전자재조합 1차)

* 대상포진 접종은 국가예방접종이 아닌 자발적으로 등록된 건만 자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산 누락으로 실제 예방접종률보다 낮게 산출될 가능성이 있음

3) 접종비용 1인 1회 지원, 10만원을 적용함.

- 접종대상자(명) = 미접종자 × 목표접종률

- 소요예산(원) = 접촉대상자 × 100,000원

$$\begin{aligned}\textcircled{1} \text{ 2027년 소요예산} &= 1,304,000,000\text{원} \\ &= 52,159 \text{ 명} \times \text{접종률 } 25\% \times 100,000\text{원}\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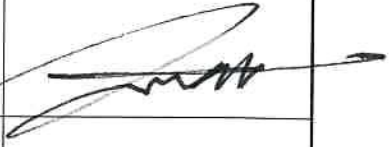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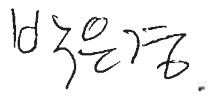
$$\begin{aligned}\textcircled{2} \text{ 2028년 소요예산} &= 860,000,000\text{원} \\ &= 43,001 \text{ 명} \times \text{접종률 } 20\% \times 100,000\text{원}\end{aligned}$$

$$\begin{aligned}\textcircled{3} \text{ 2029년 소요예산} &= 577,100,000\text{원} \\ &= 38,476 \text{ 명} \times \text{접종률 } 15\% \times 100,000\text{원}\end{aligned}$$

$$\begin{aligned}\textcircled{4} \text{ 2030년 소요예산} &= 554,800,000\text{원} \\ &= 36,984\text{명} \times \text{접종률 } 15\% \times 100,000\text{원}\end{aligned}$$

$$\begin{aligned}\textcircled{5} \text{ 2031년 소요예산} &= 517,500,000\text{원} \\ &= 35,929\text{명} \times \text{접종률 } 15\% \times 100,000\text{원}\end{align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지환 의원 발의)서명부

발 의 자		찬 성 자	
의 원 명	서명·날인	의 원 명	서명·날인
오지환		김해바른	
		정민우	
		안종욱	
		박은정	
		이은경	
		김안숙	
		라서영	
		김미령	